제7회 규제합리화위원회
민생분과 회의록

2026. 6. 30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6. 6. 30. (화)

○ 출석위원(10명)

- 민간위원 : 박용진 분과위원장, 구본권, 박선규, 오균, 윤일홍, 이희숙, 차상훈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노동부, 행안부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①	2026-163	보건복지부	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개정안	의결안건

Ⅲ. 회의 결과

1. (의결) 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개정안(복지부, 2026-163호)

소관 부처	보건복지부
규제사무명	**1.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판촉물인쇄의 매입단가 제한**
논의내용	○ **판촉물**의 **개인적 사용**은 **원·부자재**의 **매입 단가**를 **제한**하더라도 여전히 **발생**할 수 있는 문제이며, - **「이해충돌방지법」** 상 **'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'** 또는 **「부패방지법」**에 따라 **규정**된 **공공기관별 '공직자 행동강령'**에 따른 **징계 처분** 등을 통해 **규제**하는 것이 타당 ○ 또한, **공공기관**이 **고가**의 **제품**(전자제품 등)을 **매입**하여 **구매실적**을 **과다**하게 **부풀**리는 행위는 고가 제품의 **매입금액**까지 구매실적으로 전액 **인정**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**문제**이며, - **원·부자재 매입단가**를 **제한**하는 것은 **직접적인 문제**의 원인을 개선하는 **규제수단**은 **아니며,** - **부득이**하게 **10만원 이상**의 원·부자재를 사용하는 **판촉물 납품 계약** 체결까지 **차단**할 수 있어 **최선의 수단**은 **아니**라고 판단됨 ○ 이에 따라 원·부자재의 **매입단가**를 **직접**적으로 **제한**하는 것보다 **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**의 **실적 인정 기준** 등 대체방안을 통하여 개선하여 규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임

위원회 결정 내용	○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**판촉물을 매입**하면서, **고가의 원부자재**를 사용한 판촉물을 **사적으로 유용** 또는 **구매실적을 부풀리는 행위**를 방지하기 위해 **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인정** ○ 다만, 개정안은 **생산시설에 대해** 판촉물 생산시 **원·부자재 매입단가를 10만원으로 제한**함에 따라, **10만원을 초과하는 판촉물의 생산·계약까지 제한**되는 부작용 우려 - 이에, 판촉물의 원·부자재 **단가 제한**에 대해서는 **철회권고**, **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인정 제도 개선** 등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을 **부대권고**